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6하, 1777]

판 시 사 항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판 결 요 지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참 조 조 문

민법 제186조,제267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합6950 판결

참 조 판 례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301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권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을□ 담당변호사 김■환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8.13. 선고 2014나5585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5.6.15.선고 65다301판결 참조).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289.45/990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고 한다)을,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지분(이하 ‘소외 1지분’이라고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소외 1은 2002.9.11.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다.법원은 2003.4.11.‘공유자 28명은 소외 1로부터,소외 1지분 중 공유자 28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2003.1.13.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5.11.13.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2등이 소외 1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다.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외 2등을 상대로 ‘소외 1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소외 2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소송에서 ‘소외 2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소외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이에 따라 피고는 2010.4.29.소외 1지분 중 72.9541/99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1.13.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피고는 원고 종전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소외 3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전부를 처분하였다.

3.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소외 1이 원고 등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원고는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2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반면 피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그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지분 포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